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96
----------	------

제출년월일 : 2013. 12.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충주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설치·운영과 기능(안 제3조)

- 청내 / 경제과

### 나. 시설과 구성(안 제4조~제5조)

- 상담 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상담원 3명

### 다. 위탁 관련 규정(안 제6조~제8조)

- 위탁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 운영비 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와 해지

### 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9조)

### 마. 성과 분석(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불임

### 다. 합의 :

### 라. 그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3. 11. 5 ~ 11. 2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충주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과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운영 지원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 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민간 인력 파견은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이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 결산 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 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나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9]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 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6.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전문개정 2010.2.4]

## □ 총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업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 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7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평,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 관련 조문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 내용

### 가. 비용발생의 요인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교육비

### 나. 추계의 전제

-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 다. 추계의 결과

- 총 소요액 : 연간 280,088천원(시비 280,088천원)

### 라. 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 불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따로 불임

## 3. 작성자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박창선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0,088	208,088	208,088	208,088	280,088	1,400,440
인건비	107,088	107,088	107,088	107,088	107,088	535,440
운영비	73,000	73,000	73,000	73,000	73,000	365,000
전문교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280,088	280,088	280,088	280,088	280,088	1,400,440
의존 채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088	280,088	280,088	280,088	1,400,440
	지방세	280,088	280,088	280,088	280,088	1,400,44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추계의 상세 내용

구 分		산 출 내 역	비 고	
<b>총 계</b>		<b>280,088,000원</b>		
<b>민간위탁금</b>		<b>280,088,000원</b>		
인 건 비	<b>소 계</b>		107,088,000원	
	▪ 보 수(계)		97,200,000원	
	- 센터장 (1명) $2,5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30,000,000\text{원}$		각 종 수당포함	
	- 팀 장 (1명) $2,0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24,000,000\text{원}$			
	- 상담원 (2명) $1,800,000\text{원} \times 12\text{월} = 43,200,000\text{원}$			
	▪ 출장여비(교통비) $20,000\text{원} \times 10\text{일}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4,800,000\text{원}$			
운 영 비	▪ 시간외근무수당 $5,300 \times 20\text{시간} \times 4\text{명} \times 12\text{월} = 5,088,000\text{원}$			
	<b>소 계</b>		<b>73,000,000원</b>	
	▪ 센터 운영비		10,000,000원	
	▪ 각종 홍보물 제작		15,000,000원	
	▪ 홈페이지 제작		10,000,000원	
	▪ 행사운영비		38,000,000원	
	-구인구직행사		1,000,000원	
	-찾아가는취업상담실		1,000,000원	
	-일자리발굴단운영		1,000,000원	
전 문 교 육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5,000,000원	
	-취업박람회 운영		30,000,000원	
	<b>교육프로그램운영(계)</b>		<b>100,000,000원</b>	
	- 취업역량강화교육		2,000,000원	
	-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8,000,000원	
	- 전문위탁교육		90,000,000원 (지역맞춤형, 재취업교육)	